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23

발의연월일: 2024. 8. 27.

발 의 자:김미애·곽규택·박덕흠

박준태 • 조은희 • 조승환

고동진 · 김성원 · 조경태

주진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권자의 친권 남용이나 아동학대 등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지자체의 친권·미성년후견제도 관련 지식과 이해도 부족, 법적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지자체장의 친 권 상실 등 선고 청구나 후견인 선임 청구는 활발히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로 인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상당수가 부모의 사망·장기간 소재불명·친권상실 등으로 친권 행사가 곤란함에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입·퇴원·수술, 금융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입학·전학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위탁가정의 보호자, 보호대상아 동의 후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 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등에 이를 위 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 선임 절차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 는 위탁가정의 보호자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2(후견인 선임 지원) ① 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 1.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 2. 제19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에 관한 사항
 - 3.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자 및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보장원의 장에게 제1항에따른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보장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 인·단체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법률상담의 내용 및 절차,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제 정 안 제20조의2(후견인 선임 지원) ① 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 제 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 구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의 후견인 선임 청구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후 견인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자 및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보장원의 장에 게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3 보장원의 장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

<u>관·법인·단체에 제1항에 따</u> <u>른 법률상담 업무를 위탁할 수</u> <u>있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법률상담의 내용 및 절차,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